



국 기 원

세 계 태 권 도 연 령 회

수신자 :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2015년 국내 특별심사 홍보 협조 요청 건

1.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특별심사를 시행하고자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3. 현재 특별심사와 관련 일선에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특별심사는 우리 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5.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때 승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태권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태권도계의 위계질서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7. 따라서 우리 원은 공개적으로 특별심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적 검토와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8. 무엇보다 특별심사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위원회에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사유와 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9. 심의를 거친 뒤에도 소정의 연수(4박 5일)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특별심사 응시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10. 특별심사 응시자라해도 2016년과 2017년, 2년 이내에 시행되는 고단자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격이 소멸됩니다.

11.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은 기부금 형태로 정상적으로 승단한 태권도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태권도원 명인전 건립, 국기원 성지화 사업, 기타 태권도 문화조성사업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2. 귀 협회는 위와 같은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원이 시행하는 '2015년 국내 특별심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에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감사합니다. 끝.

수신자 : 대한태권도협회장, 서울시태권도협회장, 부산시태권도협회장, 대구시태권도협회장, 인천시태권도협회장, 광주시태권도협회장, 대전시태권도협회장, 울산시태권도협회장, 세종시태권도협회장, 경기도태권도협회장, 강원도태권도협회장, 충북태권도협회장, 충남태권도협회장, 전북태권도협회장, 전남태권도협회장, 경북태권도협회장, 경남태권도협회장, 제주도태권도협회장.

국 기 원 장

기안자 과장 김홍철 국내사업팀장 김일섭 사무처장최무대행 오대영 부원장 오현득(전결 10/29)
시행 국내사업 502-427호 (2015. 10. 29.) 접수 ()
우 135-9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32 / <http://www.kukkiwon.or.kr>
전화 (02)3469-0125 / 전송 (02)3469-0199 / press@kukkiwon.or.kr

HEART OF
TAEKWONDO